의 안 번	호	제	호
의	결	20 .	•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의결주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·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"에서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"로 확대하려는 것임.

##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. . ~ . .)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법률 제 호

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7항 본문 중 "36주"를 "32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	7
또는 <u>36주</u> 이후에 있는 여성 근	<u>32주</u>
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	
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	
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 근로	
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	
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	
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	
용할 수 있다.	
⑧ ~ ⑩ (생 략)	⑧ ∼ ⑩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
연 락 처

(044) 202 - 7471